

제328회 임시회  
2014. 3. 20.(목)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4. 3. 20.(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3월 12일

-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소방관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의 증원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118명 → 3,203명(+85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27명 → 1,539명 (+12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479명 → 1,552명 (+73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 연구직 : 연구관(16%이내→19%이내),  
          연구사(84%이상→81%이상)
- 소방직 : 소방경( 6%이내→10%이내),  
          소방위( 8%이내→ 9%이내)  
          소방장(14%이내→15%이내),  
          소방사(37%이내→31%이내)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6명 증원 : 5급이하 +6명
- 연구직 6명 증원 및 직급조정 : 연구관 +4명, 연구사 +2명
- 소방직 73명 증원 및 직급조정 : 소방정 +2명, 소방령이하 +71명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은·괴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8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소방관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의 증원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118명 → 3,203명(+85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27명 → 1,539명 (+12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479명 → 1,552명 (+73명)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 연구직 : 연구관(16%이내→19%이내), 연구사(84%이상→81%이상)
  - 소방직 : 소방경( 6%이내→10%이내), 소방위( 8%이내→ 9%이내)  
소방장(14%이내→15%이내), 소방사(37%이내→31%이내)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6명 증원 : 5급이하 +6명
  - 연구직 6명 증원 및 직급조정 : 연구관 +4명, 연구사 +2명
  - 소방직 73명 증원 및 직급조정 : 소방정 +2명, 소방령이하 +71명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118”을 “3,20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27”를 “1,539”로, 제2호 중 “1,479”를 “1,552”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10% 이상	1% 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u>19%</u> 이내	<u>81%</u> 이상	26% 이내	74% 이상

###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u>10%</u> 이내	<u>9%</u> 이내	<u>15%</u> 이내	31% 이내	<u>31%</u> 이상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50%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b>3,203</b>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b>1,423</b>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6	41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33</b>	-				
전문경력관 소계	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1	-				
연구직 계	<b>149</b>	-				
연구관	<b>27</b>	1		<b>24</b>	2	
연구사	<b>122</b>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 계	<b>1,552</b>	-				
소방정	<b>14</b>	3		<b>11</b>		
소방령이하	<b>1,538</b>	-				
교육공무원 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3,118</b>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1,527</b>명</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b>1,479</b>명</p> <p>3.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3,203</b>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1,539</b>명</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b>1,552</b>명</p> <p>3. ~ 4. (생략)</p>																																																																																																																																																																																																																		
<p>[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생략)</p>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b>16%</b> 이내</td> <td><b>84%</b> 이상</td> <td>26% 이내</td> <td>74% 이상</td> </tr> </tbody> </table> <p>3. 소방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3% 이내</td> <td><b>6%</b> 이내</td> <td><b>8%</b> 이내</td> <td><b>14%</b> 이내</td> <td>31% 이내</td> <td><b>37%</b> 이상</td> </tr> </tbody> </table> <p>4. (생략)</p>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b>16%</b> 이내	<b>84%</b> 이상	26% 이내	74% 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b>6%</b> 이내	<b>8%</b> 이내	<b>14%</b> 이내	31% 이내	<b>37%</b> 이상	<p>[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생략)</p> <p>2. 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b>19%</b> 이내</td> <td><b>81%</b> 이상</td> <td>26% 이내</td> <td>74% 이상</td> </tr> </tbody> </table> <p>3. 소방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소방정 이상</th> <th>소방령</th> <th>소방경</th> <th>소방위</th> <th>소방장</th> <th>소방교</th> <th>소방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3% 이내</td> <td><b>10%</b> 이내</td> <td><b>9%</b> 이내</td> <td><b>15%</b> 이내</td> <td>31% 이내</td> <td><b>31%</b> 이상</td> </tr> </tbody> </table> <p>4. (생략)</p>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b>19%</b> 이내	<b>81%</b> 이상	26% 이내	74% 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b>10%</b> 이내	<b>9%</b> 이내	<b>15%</b> 이내	31% 이내	<b>31%</b>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b>16%</b> 이내	<b>84%</b> 이상	26% 이내	74% 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b>6%</b> 이내	<b>8%</b> 이내	<b>14%</b> 이내	31% 이내	<b>37%</b>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b>19%</b> 이내	<b>81%</b> 이상	26% 이내	74% 이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b>10%</b> 이내	<b>9%</b> 이내	<b>15%</b> 이내	31% 이내	<b>31%</b> 이상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b>3,118</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b>1,41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b>1,32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b>14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b>23</b></td> <td>1</td> <td></td> <td><b>20</b></td> <td>2</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b>120</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계</td> <td><b>1,479</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소방정</td> <td><b>12</b></td> <td>3</td> <td></td> <td><b>9</b></td> <td></td> <td></td> </tr> <tr> <td>  소방령이하</td> <td><b>1,46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118</b>			-			⋮	⋮			-			일반직계	<b>1,417</b>			-			⋮	⋮	⋮	⋮	⋮	⋮	⋮	5급이하 소계	<b>1,327</b>			-			⋮	⋮			⋮			연구직계	<b>143</b>						연구관	<b>23</b>	1		<b>20</b>	2		연구사	<b>120</b>			-			⋮	⋮			⋮			소방직계	<b>1,479</b>						소방정	<b>12</b>	3		<b>9</b>			소방령이하	<b>1,467</b>			-			⋮	⋮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b>3,20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b>1,42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b>1,33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b>149</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b>27</b></td> <td>1</td> <td></td> <td><b>24</b></td> <td>2</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b>122</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계</td> <td><b>1,552</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소방정</td> <td><b>14</b></td> <td>3</td> <td></td> <td><b>11</b></td> <td></td> <td></td> </tr> <tr> <td>  소방령이하</td> <td><b>1,538</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203</b>			-			⋮	⋮			-			일반직계	<b>1,423</b>			-			⋮	⋮	⋮	⋮	⋮	⋮	⋮	5급이하 소계	<b>1,333</b>			-			⋮	⋮			⋮			연구직계	<b>149</b>						연구관	<b>27</b>	1		<b>24</b>	2		연구사	<b>122</b>			-			⋮	⋮			⋮			소방직계	<b>1,552</b>						소방정	<b>14</b>	3		<b>11</b>			소방령이하	<b>1,538</b>			-			⋮	⋮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118</b>			-																																																																																																																																																																																																															
⋮	⋮			-																																																																																																																																																																																																															
일반직계	<b>1,417</b>			-																																																																																																																																																																																																															
⋮	⋮	⋮	⋮	⋮	⋮	⋮																																																																																																																																																																																																													
5급이하 소계	<b>1,327</b>			-																																																																																																																																																																																																															
⋮	⋮			⋮																																																																																																																																																																																																															
연구직계	<b>143</b>																																																																																																																																																																																																																		
연구관	<b>23</b>	1		<b>20</b>	2																																																																																																																																																																																																														
연구사	<b>120</b>			-																																																																																																																																																																																																															
⋮	⋮			⋮																																																																																																																																																																																																															
소방직계	<b>1,479</b>																																																																																																																																																																																																																		
소방정	<b>12</b>	3		<b>9</b>																																																																																																																																																																																																															
소방령이하	<b>1,467</b>			-																																																																																																																																																																																																															
⋮	⋮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203</b>			-																																																																																																																																																																																																															
⋮	⋮			-																																																																																																																																																																																																															
일반직계	<b>1,423</b>			-																																																																																																																																																																																																															
⋮	⋮	⋮	⋮	⋮	⋮	⋮																																																																																																																																																																																																													
5급이하 소계	<b>1,333</b>			-																																																																																																																																																																																																															
⋮	⋮			⋮																																																																																																																																																																																																															
연구직계	<b>149</b>																																																																																																																																																																																																																		
연구관	<b>27</b>	1		<b>24</b>	2																																																																																																																																																																																																														
연구사	<b>122</b>			-																																																																																																																																																																																																															
⋮	⋮			⋮																																																																																																																																																																																																															
소방직계	<b>1,552</b>																																																																																																																																																																																																																		
소방정	<b>14</b>	3		<b>11</b>																																																																																																																																																																																																															
소방령이하	<b>1,538</b>			-																																																																																																																																																																																																															
⋮	⋮			⋮																																																																																																																																																																																																															

## 인건비용 추계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3,118명 ⇒ 3,203명 (증85명)

- 일반직 +6명, 연구직 +6명, 소방직 +73명

○ 추가 소요 비용 : 3,522,418,805원

(단위 : 원)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 고
총 계	3,522,418,805	
◦ 인건비	2,670,496,755	
- 기본급	1,873,062,900	
- 수 당	445,486,192	
- 정액급식비	70,980,000	
- 교통보조비	23,700,000	
- 명절휴가비	174,090,900	
- 연가보상비	83,176,763	
◦ 물건비	99,165,000	
- 직급보조비	99,165,000	
◦ 이전경비	752,757,050	
- 성과상여금	266,138,050	
- 연금부담금	176,757,000	
- 보전금	181,977,000	
- 퇴직수당부담금	58,882,000	
- 국민건강보험금	69,003,000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를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